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박근수**

요 약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자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전통적인 상거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축소시키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며, 소비자 주권의 확립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분야들도 나타나고 있다. 조세체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고정사업장이나

국내 원천소득 등 지역적 개념에 근거를 둔 조세원칙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아 그다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며 일찍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가져올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가져온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OECD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가세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 개발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중부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II. 우리나라 부가세의 구조 및 과세현황

2.1 소비형 전 단계 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제로 과세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총생산형(GNP Type), 소득형(Income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소득형 부가가치세제는 소비액은 물론 총투자액도 포함된다. 이는 임금, 지대, 이자, 감가상각비, 이윤을 합한 것으로 국민총생산액(GNP)과 일치한다.

소득형은 일정 기간의 모든 최종재 및 용역의 생산·판매된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 뿐 아니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한 국민순생산액(NNP)을 부가가치로 본다. 따라서 소비액과 순투자액(총투자액 - 감가상각비)을 합한 것으로 GNP형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것과 같아진다. 소득형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때문에 총소득형보다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비의 적절한 계산이 어렵고, 소득형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근로소득), 지대(부동산소득), 이자(이자소득), 이윤(사업소득)은 개인소득세와 과세기초(tax base)가 같기 때문에 직접세로서의 부가가

치세에 적합한 형태이다.

소비형 부가세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과 판매된 모든 최종재와 용역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총투자액)을 차감한 소비액을 부가가치로 본다. 동형은 GNP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므로 소비재 구입액만이 부가가치의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가장 넓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소비형(Gross Product Type) 부가세제로, 일정기간 동안 모든 최종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원재료, 반제품 등 중간재 구입액은 공제하고, 당해 기간에 구입한 자본재의 구입액과 당해 기간 이전에 구입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의 요소인 임금, 이자, 이윤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가산법(Addition Method)과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Subtraction Method)으로 나누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느냐, 간접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직접법(Direct Method)과 간접법(Indirect Method)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 단계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접법인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

<표 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부가세유형	GNP 형	소득형	소비형
계산방법	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 = 임금 + 지대 + 이자 + 감가상각비 + 이윤	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감가상각비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자본재구입액 = 임금+지대+이자+이윤+감가상각비-총투자액(자본재구입액)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순투자액 (자본재구입액-감가상각비)

산한 매출세에서 매입 시에 상대방에게 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 공제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전 단계 납부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것을 기초로 한 장부를 기장 할 의무가 있다한다. 동 제도는 거래의 중간단계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과세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생산물의 세액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 시에 품목별 용도별로 납부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와 용역이 부담하는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제국 등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Tax credit method)을 택하고 있다.

2.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대리납부 제도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가세 도입국가에서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원칙 하에서 공급장소(place of supply)는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EU는 EU지침 제9호에서 EU국가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중과세

<표 2>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 원칙

	개 요	수 출	수 입
생산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서 과세권 행사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환급하지 않음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에서 과세권 행사	수출 시 간접세를 전액 환급하여 부담을 제거함	간접세 공제·환급하여 간접세를 완전히 면제함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법

및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서비스의 사업장을 공급장소로 보는 개념과 사업장과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수행되거나 향유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보는 개념이 있다.

<표 3> EU의 공급장소 규정

원칙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외	토지관련서비스	토지소재지 과세
	운송서비스	운송발생지 과세
	문화·연예·예술 서비스	공연지 과세
	무형·지적서비스(저작권·특허·광고·전문적 및 자문용역, 금융 거래)	소비자가 소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정시설이 소재 하는 장소에서 과세

자료: 김유찬·이성봉(1998)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¹⁾, 재화 수출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²⁾, 과세하지 않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용역의 수입 시에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용역 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②, ③
2) 부가가치세법 11조①항

제공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대신 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대리납부제도³⁾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과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⁴⁾. 또한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을 시는 납세관리인을 두어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⁵⁾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업자로부터 국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도를 제외하고는 여타 관련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2.3 부가세 세수현황

부가가치세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를 포함 전 세계 105개국(1997년 현재)이 채택하고 있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30%

정도⁷⁾를 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0% 정도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 표 5 참조)

III.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특징

3.1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

전자상거래라 하면 인터넷을 떠올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의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2년 2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 수⁸⁾는 전 국민의 61.8%인 2천265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음성,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

<표 4> 국가별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수기여도(1997년 기준)

(단위: %)

국별	한국	일본	싱가폴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표준세율	10	5	3	20.6	18	17.5	7	17	15
세수기여도	32.0	5.9	9.1	18.5	17.8	19.1	7.8	50.7	20.9

자료: <http://www.kipf.re.kr>

<표 5>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납부액	8,253	10,076	11,688	13,058	14,636	16,790	19,488	15,707	20,368	21,670
점유율	29.3	31.3	32.6	30.6	29.0	29.4	32.0	26.7	31.3	31.5

자료: <http://www.kipf.re.kr>

3) 제34조 대리납부 ①, ②

4) 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대상

5) 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②, ③

6) 미국과 호주는 부가세 대신 매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7) Owens, Jeffrey, "Taxation in Cyberspace", 한국조세연구원 발표논문집,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 1997, 12, pp.24-56.
8) 인터넷이용 인구수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조사기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여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향·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불특정다수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거래 활동이 용이해졌고 소비자 역시 상품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분야가 기업영업의 보조적인 역할과 제한적인 쇼핑물에서 광고, 정보서비스(경제정보, 주가정보, 뉴스 등), 온라인서적 출판, 게임, 음악, 방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로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인터넷인구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2000년 3월의 8.9%에서 2001년 3월에는 13.9%로 2001년 9월에는 19.1%로 급속히 증가하였다.(표 6. 참조)

<표 6> 인터넷인구와 전자상거래 이용인구 비율

조사시기	2000년 3월	전자상거래 이용비율
2000년 3월	1,393만 명	8.9%
2001년 3월	2,093만 명	13.9%
2001년 9월	2,412만 명	19.1%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 9, 2001, 4, 2001, 10)

<표 7> 2000년 전자상거래 총거래액

(단위: 십억원, %)

	B2B	B2C	해외수출	기타	합계
총거래액	835,688.9	-	232,591.1	-	1,269,533.0
전자상거래액	52,327.6	733.7	4,449.8	47.3	57,558.4
비중	6.3	-	1.9	-	4.5

자료: 통계청 (2001, 6)

이처럼 인터넷인구의 증가와 인터넷 인구의 전자상거래 이용 인구의 증가로 2000년 기준 국내의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57조 5,584억원으로 2000년 총거래액 1,269조 5,330억원의 4.5%에 해당하고, B2B 거래액은 52조 3,276억원, 기업간 총거래액 835조 6,889억원의 6.3%, 기업·소비자간거래(B2C)가 7,337억원, 해외수출거래 4조

4,4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인구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2005년에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11.7%에 이르고⁹⁾ 그 결과로 전자상거래 규모 역시 187조원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Gartner Group의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 역시 2005년에는 85,300억 달러로 2001년도 거래예상액 4,333억 달러에 비하여 20배라는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3.2 전자상거래 특징

전자상거래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 간(B to B)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B to C)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라 하면 인터넷을 떠올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규모의 증가는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가져올 조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온 OECD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징¹⁰⁾을 다음 네

9) (주) 이비즈그룹, "국내 산업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 2000 -2005년" 총 거래 규모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1999년 0.979%, 2000년 1.9%, 2001년 3.2%, 2002년 4.6%, 2003년 6.4%, 2004년 9.0%, 2005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가지로 지적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기술상의 특징을 갖은 인터넷 기술이 기반인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표 8>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억원, 억 달러,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	거래액	91,949	174,167	293,414	485,602	787,306	1,239,655	1,876,856
	증가율		189	168	165	162	157	151
세계	거래액	1,500	4,333	9,190	19,290	36,320	59,500	85,300
	증가율		201	189	112	110	64	43

자료: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2001); 김정유, 구영환(2001. 1); <http://www.iec-expo.com>.

첫째, 중앙통제의 어려움이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소재가 없다. 인터넷 사용자는 받거나 보내고자하는 정보의 유통경로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중앙등록의 부재이다. 인터넷상의 어디에서도 컴퓨터를 새로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등록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에게로 이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거의 없다. 또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는 데에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매우 용이하다.

셋째, 추적의 어려움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허가만 얻는다면 사이트의 사용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암호화를 통해 정보전달이 되는 경우에 이를 추적하여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컴퓨터도메인과 실재 소재지 차이이다.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파악은 가능하여도 인터넷 주소가 컴퓨터의 물리적 소재지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상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인터넷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는 가상 공간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이용한 거래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발생하므로 전통적인 상거래의 중요한 유통채널인 도매상과 소매상 등 유통 채널이 불필요하다.

셋째 판매 거점이 불필요하다.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 상품의 진열과 보관 등에 일정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였으나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진열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물품의 보관 역시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가 불필요한 즉 물리적인 판매 거점이 불필요하다.

넷째 소액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여진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액자본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진입 탈퇴가 자유롭고 빈번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정보를 보고 및 확보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감소되어

10) OECD, "Electronic Commerce: The Challenge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 Truku Finland 18th November, 1997, pp 9-11

과세 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행위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사용자 통제능력을 결여되어있다.

일곱째,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확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등이다.

이외에도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지며, 고객의 니즈에 동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V. 부가세 개편 논의 동향

4.1 전자상거래와 조세행정

인터넷의 활용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거래비용의 감축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을 통한 완전경쟁시장으로의 근접 등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지대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경제체제로는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 지적한 인터넷기술의 특징은 중앙통제의 어려움, 중앙등록의 부재, 추적의 어려움, 컴퓨터도메인과 실제 소재지 차이 등이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영업활동, 거래의 암호화, 전환장치의 사용, 소액 창업 가능으로 인한 빈번한 개·폐업, 낮은 거래비용으로 빈번한 소량의 거래의 발생 등으로 납세자의 신분확인과 과세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통신망 위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어떤 특정한 실재장소와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소비자 과세원칙에 변화가 요구되며, 경제행위자의 신분확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정보를

보고 및 확보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감소되어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납세자를 확인하고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세원관리의 효율성과 세수확보 등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구분의 불명확 등 기존의 과세권 분배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진입 탈퇴가 자유롭고 빈번함에 따라 납세자의 관리가 어려워 세원 탈루의 위험이 상존하며 동시에 경매 및 역경매를 통한 B2C 및 C2C의 거래 활성화는 동일한 상품에도 서로 다른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과세 당국에게는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부가세 관리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인터넷의 확산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조세행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OECD에서는 일찍이 1996년 6월부터 재정위원회 산하에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조세행정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대책을 분야¹¹⁾별로 나누어 연구하기 시작하여, 1998년 6월 재정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 조세체계의 조건(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라는 공문서를 채택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네 가지 원칙이다.

첫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술이 세정당국에는 납세자 서비스를 높일수록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11) 제1작업반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전자상거래 적용가능성 및 고정사업장과 사용자 소득의 개념
제6작업반 : 이전가격지침의 전자상거래 적용
제8작업반 : 전자상거래가 조세순응 및 조세회피 등에 미치는 영향
제9작업반 : 온라인제품의 공급장소 결정 및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로 활용하여야한다. 새로운 기술은 납세자지원과 관련한 서비스기준의 개선, 기업들의 순응비용최소화, 자발적 순응의 제고를 가능케 한다.

둘째, 전통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표 9의 조세 원칙들이 전자상거래에서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소비과세의 적용에 있어 디지털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업 등이 타국의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나 무형의 재산을 공급받는 경우 세원의 잠식이나 자국공급자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대리납부제

<표 9>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 용
중립성(neutrality)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간 조세 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한다.
효율성(efficiency)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명확·간편성(certainty and simplicity)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편하여야 한다.
효과·공평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하며 공정하여야한다.
유연성(flexibility)	기술 및 산업 발전에 탄력적, 동태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조세원칙을 적용하는데 기여하면서 전자상거래에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의 수단들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넷째, 이러한 조세원칙을 국내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거나 현재의 국제조세원칙들을 조정함에 있어 각 국의 재정주권은 보호되어야하며, 국가 간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세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이중과세나 의도되지 않은 비과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1998년 10월 7일 - 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 경제권, 및 주요 경제기구, 업계, 소비자 및 노동자,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범지구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제반 이슈들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세와 관련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합의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 사항들이다.

첫째 소비과세원칙이 유지되어야하며, 어느 역내에서나 소비가 발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도(역부과:reverse charge), 자기부과(self-assessment) 또는 유사한 수단을 강구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비지 및 과세지의 정의와 무형재화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세의 효과적인 징수 및 행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EU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한다. 등이다. 한편 오타와회의에서는 동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기업체 및 비회원국들의 대표들과 함께 5개의 기술자문그룹¹²⁾을 구성하여 2년 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2002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12) 기술그룹(Technology TAG), 자료평가그룹(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AG), 소비세그룹(Consumption Tax TAG), 기업이익그룹(Business Profits Tax TAG), 소득특성그룹(Income Characteristic TAG)

4.2 전자상거래와 소비지과세원칙

부가세 부가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전자상거래가 출현하기 이전의 기존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되므로 서비스의 공급장소(사업장)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직원이나 사무실 등의 고정사업장¹³⁾이나 시설이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영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OECD의 조세협약 상에 나타난 공급장소개념을 그대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공급장소(place of supply)개념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급장소의 개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공급장소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검토하는 방안과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장소의 개념을 '소비자가 소재하는 곳'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국제 간 부가가치세 조정에 관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 OECD의 입장에 의하면 B2B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규정하고, B2C거래는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1년 6월 26-27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

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B2B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제도에 합의하였으나 B2C거래는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뒤에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사업자 등록 방식' 안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파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공급장소를 소비자가 소재 하는 곳으로 변경한 사례는 전화 콜백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전화콜백서비스의 경우 외국통신사업자가 EU역내 소비자에게 콜백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EU 역외에 있으므로 EU 국가들에게는 과세권이 없었다. 이에 EU에서는 1997년 7월 1일 전화콜백(call-back)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공급장소를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소비자의 소재지로 변경함하고 부가세 납부대상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스스로 대리 납부하도록 하였고, 대리납부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일반개인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에서 직접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EU국가들이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4.3 재화 및 서비스의 구분의 재정립

거래의 종류가 물품의 거래, 특허권 사용, 서비스 제공 등의 여부에 따라 세제 적용이 달라진다. OECD에서는 디지털제품은 소비세 목적상 재화로 보지 않으나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물품의 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¹⁴⁾는 입장인 반면,

13)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1항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14) OECD, "The Tax Treatment of Software," 1992.

영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거래를 지적서비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¹⁵⁾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물품이 수입되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나 수입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판매회사가 원천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관세나 부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나 원천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재화에 속하는가 용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과세대상과 과세주권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구분은 기업으로 하여금 재화를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반대로 서비스를 재화로 판매하게 하여 부가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OECD의 1998년 10월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콘텐츠의 ON-LINE다운로드를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콘텐츠의 ON-LINE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세수기반 및 국내 공급자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대리 납부나 자진신고납부제 등과 유사한 과세 체도를 개발하여 활용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디지털화가 가능한 제품(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라도 재화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경우 현행 세법상 통관절차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후 2002년 2월 12일 EU 15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음악과 전자책, 동영상 등 소프트웨

어를 인터넷으로 EU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외기업에게 2003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게임이나 동영상 등의 디지털제품에만 적용되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 거래와 B2B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뿐 아니라 서비스 유형의 구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U의 공급장소 원칙에 의하면 공급된 서비스를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진다. 즉 정보 통신 및 방송서비스는 공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되고, 컨설팅 및 기술서비스와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며, 연역서비스는 공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과세되고있다. (표 3 참조)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공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4.4 전자상거래와 세수유출

중간거래단계의 축소는 유통단계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과표를 축소시키게 되어 정부 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특징 상 세원포착의 어려움으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유출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에서 오프라인 거래는 관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세선 통과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는 B2C혹은 C2C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및 용역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는

15) HM Customs and Excise, "Importing computer software," 1994.

국제거래의 경우 EU의 공급장소의 규정으로는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 할 수 없어 부가세를 부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특징 상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없이 무세국가(tax haven) 혹은 부가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사업장 이동을 초래하여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V. 우리의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세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위축하여서는 안되며,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든 전자상거래든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부가세에 미치는 영향의 대응방안으로는 아래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5.1 대리납부제도의 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리납부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서비스는 위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대리납부제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동 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만 적용되어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세

도입 당시에는 일반사업자에게도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번잡함을 초래할 뿐 국가세수 증대에 아무런 도움이 못하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이유에서 1993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국내공급자와 국외공급자 사이에 과세방법의 차이로 조세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제품의 거래는 왜곡효과를 크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대리납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왜곡을 방지하고 동시에 세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용역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정보확보의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대리납부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다. 또한 대리납부제도는 용역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으로부터 변호사나 회계사의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여기에 적용시킬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의 전문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납세관리제도의 개편.

개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B2C거래 및 개인에 공급되는 외국의 용역은 납세관리인제도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EU 국가들이 역내 무역에서 상품 이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을 다른 나라의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에 사업자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공급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납세 관리인제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 과세 근거를 포착하기가 어려워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국내 공급대가가 외국으로 송금되는 시점에 송금 은행에서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금융기관으로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현행 공과금의 대리 납부처럼 수납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자금을 유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5.3 공급장소 개념의 변경

과세장소에 대한 쟁점이 되는 공급장소의 개념을 확대하여 공급장소를 소비자의 소비지로 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기술의 특성을 이용 기업들이 부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관할권 밖에 있는 조세회피 지역 등에 가공의 공급장소를 갖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EU는 1997년 7월 1일 전화콜백(call-back)통신서비스의 공급장소를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소비자의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EU국가들이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대상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스스로 대리 납부하다 하였고, 대리납부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일반개인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에서

직접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5.4 전화세의 개편

전화통신서비스가 EU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전화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거리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 그리고 부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제도 등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원거리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가세 도입 당시에는 전화사업을 체신부가 독점하고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움이 있어 부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 전화사업자의 등장과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가 완료된 시점에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세를 부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의 원거리 통신사업자에게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화세를 폐지하고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5.5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전자상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을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명확한 구분이 요청된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유통수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용역을 비거주자

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제도를 통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의 종류에 따라 적용 세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정보재(information good)와 소프트웨어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지적재산권의 사용 대가로 볼 것인가의 거래 종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거래를 물품 거래로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셰어웨어(shareware)¹⁷⁾처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신종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기존의 분류 체계 하에서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불분명한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사업자가 그들의 상품을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과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유형구분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지므로 이들 서비스들의 유형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새로 정립될 필요성이 생긴다.

VI. 결론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전반적으로 소비지국과 세원칙을 표명하고 있음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재화 수출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용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면세사업자가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리납부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서 잘 나타나있다. 또 납세관리인 제도가 있어 사업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전체적으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당분간 재화와 용역, 특히 용역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제거래에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입장에서는 것이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과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리납부제도를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공급자와 개인 사이의 직접 거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국내에서 사업장으로서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를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요

16)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6-1-13)

-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대가
-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 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

17)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터넷상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사용자가 등록비를 지불한 후 등록하면 사용설명서,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국가 간 용역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서비스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수입서비스를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OECD, "Electronic Commerce: Th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November 1997, pp. 9-11.

_____, "The Tax Treatment of Software," 1992.

<http://www.kipf.re.kr>

<http://www.iec-expo.com>.

참고문헌

- 김유찬·이성봉, "전자상거래와 조세",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수립 토론회 발표문, 1998.
- 김정유, 구영완, "국내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2000-2005", 이비즈그룹, 2001, 1.
-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관련 기초 통계 조사결과," 2001, 1.
- 정규언, "전자상거래로 인한 조세문제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경상논집」, 1999, pp.121-144
- 통계청, "2000년 전자상거래 기업체 통계 조사결과", 2001, 6.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2000, 3)" 2000. 9.
- _____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결과보고서," 2001. 4.
- _____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결과보고서," 2001. 10.
- 홍범교, "전자상거래와 조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제규범워킹그룹, 2002.1, pp.131-145,
- Owens, Jeffrey, "Taxation in Cyberspace", 한국조세연구원 발표논문집,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 1997. 12, pp 24-56.
- HM Customs and Excise, "Importing computer software," 1994

A Study on the VAT of the Electronic Commerce

Keun-Soo, Park*

Abstract

Electronic commerce using the Internet has rapidly changed our daily lives in recently years. Electronic commerc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broad range of wide economic activities. E-Commerce has created a fundamentally new way of conducting and will change drastically accepted ways of doing business and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taxation system are need new challenge. This paper study improvement policy of the VAT. Especially This paper were concentrated the taxation administration, the place of the supply/fixed established rule and off-line or on-line goods and service.

* Dept. of the Economic. Joongbu University